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48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엄태영 · 윤한홍 · 신성범
김용태 · 김태호 · 서천호
유상범 · 김선교 · 김형동
박충권 · 이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입지, 지역 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이전대상지역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본사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을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경우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입지, 지역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u> <u>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u> <u>제25조의2(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u>
<u>④ ~ ⑦ (생 략)</u> <u><신 설></u>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이전대상지역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본사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을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